

[참 조]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4-33
----------	-------

제출년월일 : 1994. . . .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청 소 과)

1. 제정사유

- 폐기물 투기행위와 분리배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분 절차의 간소화 및 부과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통한 쓰레기를 감량화하므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63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3. 주요 골자

-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 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법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제42조)
- 과태료 부과금액의 대폭 상향 조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보완
 - 폐기물관리법 : 최저 25,000원 ~ 최고 1,000,000원까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최저 300,000원 ~ 최고 3,000,000원까지

4. 조례(안) : 붙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 3 조(청문)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 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 4 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 6 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8 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 9 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별표 1]중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별표 1]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관련한 제1항 “가”목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3. 제1호 및 제2호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규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제14조 및 [별표 2]는 이를 삭제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법 제7조)			
	가.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 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25	25	25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0kg미만(매회마다)	50	50	50
	(2) 10kg이상(")	100	100	1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 10kg미만(매회마다)	100	100	100
	(2) 10kg이상(")	200	200	20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 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 1톤미만 (매회마다)	200	200	200
	(2) 1톤이상 5톤미만	300	300	300
	(3) 5톤이상 10톤미만	400	400	400
(4) 10톤이상	500	500	5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물 관리법	마.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 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다량배 출자 및 동법 제17조제1항의 일반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제외) (1) 5톤미만 (2) 5톤이상	500	500	500
		1,000	1,000	1,000
	2. 일반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 관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 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 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 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500
	나.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면서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	50	50	50
	3.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 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300	500	1,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법 제15조제5항)			
	가.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2,000	3,000
	나. 객석이 66제곱미터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다.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일반목욕장업(공동탕·가족탕·한증막)	1,000	2,000	3,000
	(2)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터키탕·복합목욕탕)	1,500	2,500	3,000
	라. 객실이 30실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업	1,500	2,500	3,000
	(2) 여관업 및 여인숙업	1,000	2,500	3,000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 센터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0	2,500	3,000
	바.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및 쇼핑 센터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 매하는 자가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사.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 매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	2,500	3,000
	2.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 기물의 재활용 또는 분리보관기준 준 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가.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터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나. 다량배출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 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 및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직할시 달성구청장		인	

과태료 납부통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	

영수필 통지서
(구청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달서구청장 귀하	

영 수 증
(개인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380mm X 180mm (인쇄용지 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처분기관 보관용)

(갑)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폐기물과태료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납부 시내 각 은행 본점·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납부 장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위반사실	일시	내 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7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인	

특기사항

○ 표의 뒷면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m²)

(피처분자 통보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을)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폐기물과태료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납부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예금취급소, 농협(단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제외)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7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확인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인)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2, 3번의 밑줄 친 부분은 피처분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체로 인쇄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병)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폐기물과태료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납부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합)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제외)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개인통지용)

과태료납부영수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폐기물과태료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납부 장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단합) 수협, 전국우체국(한은제외)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168mm × 118mm

(인쇄용지(특급) 34g/㎡)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정)

(구청동보용)

과태료 납부영수필 통지서

(무)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세의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폐기물과태료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주 소	남부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단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제외)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일자도장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귀하

168mm × 118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호
의무자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금액		⑦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 직 할 시 달 서 구 청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귀하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⑥부과기간		⑦이의제기 일 자	

-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번호	② 통지서 통번호	③ 과태료 통지일	④ 과태료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액	납세의무자		⑩ 과납 료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범원통보일

210mm X 297mm
(신문용지 54g/m²)